

제12조 및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중 “측벽에 대한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를 “측벽 및 거실의 외기애 접하는 창에 대한 열관류율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축건축물 및 특례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중 “2배이하(특례제한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이하)”를 “2배이하”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 중 “2분의 1이상(특례제한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지구 안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특례제한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주거환경개선계획이 현지개량방식 또는 환지방식사업인 지구안의 건축물(이하 “지구안의 건축물”이라 한다)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안의 건축물을 2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안의 건축물 중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안의 건축물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안의 건축물

중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2. 높이 4미터를 초과하고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체를 환지방식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본다.

⑤ 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세대이하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정남 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
 - 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는 4미터 이상
 -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는 3미터 이상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단서중 “바에 따른다.”를 “설치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중 “165제곱미터”를 각각 “20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최소한도에”를 “20제곱미터에”로 한다.

조례 제2617호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부칙 제1항 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주거용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조례 제18조 관련) (단위 : 퍼센트)		
용도별 구분	주 거 용	비 고
특례건축 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	복합건축 물은 비 주거용건 폐율(60 퍼센트) 적용 80
특례제한 건축물	연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인 공동주택	70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단독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 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공 동주택	60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 제8조 · 제8조의2 · 제10조 · 제11조 · 제14조제2항 · 제17조 · 제18조(별표) · 제19조 · 제21조 · 제21조의2 · 제25조 및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 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길음택지조성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97

제출년월일: 1999년 12월 18일
제안자: 교통위원회 위원장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하였던 교통순시원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이 1997.12.6.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9조(1997. 12. 6. 삭제)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순시원급여품및대여품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국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 및
인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

1999. 12. 28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청원일자 및 청원자: 1999년 12월 22일, 박
병진의 216명
○ 소개의원: 김성환의원(국민회의)
○ 회부일자: 1999년 12월 22일
○ 상정일자
- 제17회 정기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1999년 12월 22일) 의결 · 상정

2. 청원요지
○ 청원인들은 5년이상 방치되어 있던 부국연
립주택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재
건축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세부내역을 확